



대 구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5고정41 절도
피 고 인 A
검 사 양근욱(기소), 설지은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김구호(국선)
판 결 선 고 2025. 6. 24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유

1. 이 사건 공소사실

피고인은 2023. 12. 중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흙 약 3톤(이하 위 토지를 '이 사건 토지', 위 흙을 '이 사건 흙'이라고 한다)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파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.

2. 판단

가.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,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



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·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(대법원 2008.

7. 10. 선고 2007도11017 판결 등 참조).

나.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흙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이를 자기의 점유로 옮겼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흙을 취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,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흙을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, 즉 이 사건 토지상의 현황도로 옆의 움푹 파여 있던 부분에 적치하여 현황도로의 구조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,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 적치 전후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에 뚜렷한 변화(현황도로 옆 움푹 파인 곳이 메워져있다)가 확인되는 점, 피고인이 이 사건 흙을 굴삭기로 퍼서 옆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트럭 등에 옮겨 실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,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인바, 굳이 이 사건 흙을 다른 장소에 옮겨 가 사용할 만큼 이 사건 흙이 특별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,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.

재물에 관한 실력적 지배가 취득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재물의 크기, 무게, 보관 장소 및 상태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맞게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, 이 사건 흙의 무게가 3톤에 이르는 것이고 그 취거에 굴착기가 동원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, 피고인이 이 사건 흙을 이 사건 토지 내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 적치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벗어나지도 않았다면, 이는 피해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재물의 취득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.

다.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흙에 관하여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



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·처분할 의사,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흙의 적치장소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내이고 그 용도 또한 피해자 소유 토지상 현황도로의 구조안정성을 보강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인 점, 위 현황도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토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위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현황도로를 피고인이 자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흙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[만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흙을 타인 소유 토지로 반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면, 불능범(형법 제27조)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, 이 사건 흙을 파낸 장소와 적치한 장소가 연접해있는 점,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'흙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, 피해자 토지와 현황 도로 사이의 봉 뜬 곳을 흙으로 메운 것이다.'라고 진술하였던 점¹⁾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흙을 타인 소유토지로 반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].

3. 결론

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용근 _____

1) 수사보고서(피의자특정)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참조